

(붙임 2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	비 고																		
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 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2</td> <td>벤처기업</td> <td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 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</td> </tr> <tr> <td>A3</td> <td>혁신기업</td> <td>(생략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(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한 경우)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전산 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 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A3	혁신기업	(생략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(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한 경우)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생략)	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 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2</td> <td>벤처기업</td> <td>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</td> </tr> <tr> <td>A3</td> <td>혁신기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로, 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전산 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A3	혁신기업	(현행과 같음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로, 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현행과 같음)	<p>- 근거법령 변경 사항 반영</p> <p>- 선정기준 정비</p>
전산 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의 3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																					
A3	혁신기업	(생략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(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한 경우)로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
전산 코드	지원부문	선정기준																						
A2	벤처기업	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'벤처기업확인서'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제조업체																						
A3	혁신기업	(현행과 같음) - 기술평가인증서(기술신용평가인증서 포함)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중소기업대출로, 대출원장 등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입을 명기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장이 확인<별지 제6호 서식>한 경우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data-bbox="168 252 338 276"><별지 제6호 서식></p> <p data-bbox="369 304 714 33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</u></p> <p data-bbox="181 419 432 443">한국은행 울산본부장 귀하</p> <p data-bbox="192 496 916 552">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 data-bbox="208 604 315 628">— 업체명 :</p> <p data-bbox="208 671 315 695">— 대 표 :</p> <p data-bbox="208 738 353 762">— 사업자번호 :</p> <p data-bbox="208 805 336 829">— 계좌번호 :</p> <p data-bbox="208 873 315 896">— <u>대출일</u> :</p> <p data-bbox="208 940 333 963">— <u>대출금액</u> :</p> <p data-bbox="497 1203 640 122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data-bbox="524 1270 759 129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은행 지점장(인)</p>	<p data-bbox="934 252 1104 276"><별지 제6호 서식></p> <p data-bbox="1131 304 1476 336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</u></p> <p data-bbox="943 419 1193 443">한국은행 울산본부장 귀하</p> <p data-bbox="954 496 1677 552">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 data-bbox="969 604 1077 628">— 업체명 :</p> <p data-bbox="969 671 1077 695">— 대 표 :</p> <p data-bbox="969 738 1115 762">— 사업자번호 :</p> <p data-bbox="969 805 1097 829">— 계좌번호 :</p> <p data-bbox="969 873 1097 896">— <u>대출잔액</u> :</p> <p data-bbox="1258 1203 1402 122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data-bbox="1285 1270 1520 129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은행 지점장(인)</p>	<p data-bbox="1695 288 2018 312">- 서식 항목 간소화 및 문구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align="center"><u><신설></u></p>	<p align="center"><u>부칙 (2022. 7. 8.)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기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2년 10월 첫 영업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</u>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칙 신설 - 시행일 명시 - 경과조치 마련